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원승연**

〈 요약 〉

본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금융부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부담률 또는 원금상환부담률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지니계수와 에스테반-레이지수로 계산한 소득불평등도는 금융부채로 인한 원리금 부담을 고려할 때 훨씬 악화되었다. 셋째, 금융부채비율이 높은 가계는 원리금상환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하위층 가계는 경상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금융부채비율이 높을 때 가처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부채의 증가가 상위층보다는 하위층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보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주제어: 가계부채, 가처분소득, 소득불평등, 원리금상환

* 논문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박사와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인하대 한재준 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sywon@mju.ac.kr).

1. 서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었음이 보고되고 있다¹⁾. Piketty(2014)는 소득불평등과 관련하여 자본소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소득불평등이 축적되어 자산으로 형성되고, 이러한 자산을 통한 소득이 소득불평등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금융위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다. 항상소득가설에 기초한다면, 가계부채 증가는 소득과 소비의 기간상의 괴리를 축소하는 소비 평탄화라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부채는 저소득자의 미래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미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유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후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모기지 부실화 증가는 이러한 가계부채²⁾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계기가 되었다. Iacoviello(2008)와 Kumhof et al.(2013)는 부채 증가로 인한 가계의 부실화가 금융위기를 유발한 요인임을 지적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부채 증가가 오히려 후생을 감소시켰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Bertrand & Morse(2013)는 중위층이 차입 이후 그에 상응하여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최근의 흐름은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금융부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출 흐름이 실질적으로 가계의 소비와 후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DP 대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규모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지출과 같은 실물경제적 차원에서의 현금흐름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통한 현금흐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그 완화 방안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소득계층별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함의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도 가계의 금융부채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

1) 성명재 (2011), 김낙년 (2012) 참조.

2) 가계부채는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로 구분되기도 한다. 가령 비금융부채로는 전세보증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문제는 금융부채에 그 초점이 있으며, 연구들 역시 대부분 금융부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가계부채를 서술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의미한다.

수 있었다. 그러나 가계의 금융부채에 대한 연구 대부분은 소득계층별 분석을 통해 각 계층별로 부채보유의 특성과 채무상환 위험을 판단함으로써 소득 격차에 따른 가계부채의 특성을 분석하였을 뿐, 소득계층별 부채의 특성 및 변동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분석을 하지 않았다³⁾.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가계의 금융부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그것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계 금융부채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했다는데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⁴⁾.

특히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가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에 보다 관심을 둔 것과 달리, 설령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에 커다란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가계의 금융부채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원리금상환 금액이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가계의 부실화가 진전되지 않더라도 가계의 복리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소득 하위층에서 보다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이 조사, 발간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중에서 금융부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자료는 2012년부터 확대 개편된 패널자료로서 그 이전 조사와 단층이 발생하여 시계열적인 분석에는 아직 한계가 존재하지만, 다른 조사에 비하여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관련한 상세한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가계의 현황에 대해서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소득 흐름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서베이 자료가 저량 변수인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단점이 있으며, 반대로 금융기관에서 생성한 자료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나 소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단점이 있는데 비하여 동 자료는 두 가지 측면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답변자에 의존도가 높은 서베이 자료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자의 금융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었는지는 의문이 존재하여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별로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지급액 및 원금상환액 부담을 분석해볼 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금융부채로 인한 부담액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층의 높은 금융부채 부담은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차감한 가

3) 김우영·김현정(2009), 유경원(2009), 함준호 외(2010), 홍기석(2013) 참조

4) 김정옥 외(2015)는 본 연구와 동일한 모티브와 관점에서 가계의 금융부채를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본 연구와 달리 KCB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처분소득 기준으로 평가할 때, 소득불평등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에서 원리금을 차감한 가치분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지니계수와 에스테반-레이 지수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평등도가 훨씬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 대비 높은 부채비율이 원리금차감 가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가 하위층의 가치분소득을 중상위층보다 더욱 감소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소득불평등도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은 가계의 금융부채와 관련한 문헌 연구이다. 제3절은 분석 자료에 대한 설명이며, 제4절은 통계량을 중심으로 소득계층별 가계의 금융부채 보유 특성과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제5절은 회귀분석을 통해서 가계의 금융부채가 미래의 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6절은 결론이다.

2. 문헌연구

금융부채와 관련한 기존 연구의 주요한 초점은 가계부채의 소득에 대한 영향보다는 소득의 가계부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가령, 김우영·김현정(2009)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가구주가 연령이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증가시켰음을 보고하였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지역의 거주자가 다른 지역보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지적하였다. 유경원(2009)은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에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가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함준호 외(2010)는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 총 2,210만 명의 개인 신용 미시자료에 기초하여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연구는 금융부채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득계층별로 부채 규모 또는 부채비율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고, 적어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채가 증가하였고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갖고 있음을 보였다. 김경아(2011)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인구학적 특성이 가구부채 보유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부동산자산 및 소득과 같은 요인이 부채보유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하여 소득계층간의 부채수요가 상이하였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김학주(2005)는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소득계층별 부채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그 방법이나 분석 결과는 다른 연구와 다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 대부분은 소득불평등과 금융부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금융부채를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로서 소득이라는 변수를 분석하는 차원이었다. 이들은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그 부채규모 또는 부채비율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소득계층이 부채 보유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반대로 부채가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연구는 가계의 부채 증가를 우려하면서 그 논의의 초점을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시장의 건전성 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맞추었다. 유경원(2009)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함준호 외(2010)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면서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가계부채의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전승훈·임병인(2012)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느 계층에서 부채상환위험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처럼 이들 연구는 미시적인 자료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함의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영향, 가령 부채가 개별 가계의 미래소득이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관심이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은 200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가 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의 증가가 중위층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고소득층이 자금공급자였던 것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고소득층이 자금차입을 주도해왔다⁵⁾.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차입 증가가 사회후생을 개선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는가에 대한, 이른바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이들의 소득을 개선하고 후생을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증가가 미래의 소득이나 소비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과거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금융발전으로 인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저소득층에

5) 여러 연구들이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 중심의 실물자산 증가가 금융부채의 증가와 병행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유경원(2009), 최원호(2013), 홍기석(2013) 참조.

대한 신용제약이 완화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거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Greenwood & Jovanovic(1990)는 이러한 금융발전의 영향력이 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고, 따라서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상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Bertrand & Morse(2013)의 지적대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신용공급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증가한다면, 오히려 신용공급이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낮추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3. 분석 자료

가계소득 분석에 가장 적합한 자료는 조세 자료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는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가계의 소득 및 자산·부채 보유 현황 분석에는 통계청 등이 작성하는 서베이 자료와 신용평가회사의 자료가 주로 이용된다⁶⁾.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금융기관과의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개인별로 금융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적어도 성인 이상의 대부분이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는 전수 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⁷⁾. 그러나 이 자료는 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개별 소득자에 대한 연간 소득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 시점의 소득 자료를 집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차입자의 상당 부분 소득이 실제 소득이 아니라 추정 소득이다. 그러므로 소득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개인 소득이 추정되기 때문에, 분석 모형에 의하여 추정된 소득이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동 자료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자산과 여타 부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한편, 서베이 조사 자료로서는 ‘노동패널조사’,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이전의 ‘가계금융조사’) 등이 있다. 노동패널조사는 패널자료로서 가계의 소득 및 자산·부채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동패널조사의 주된 목적이 노동시장

6) 이하에 서술되는 가계부채 분석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의 특성과 장단점과 관련해서는 원승연(2014), 김정옥 외(2015)를 참조하였음.

7)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별 차주의 정보를 수집하고 집계하고 있으며, KCB 또는 NICE 등의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 신용등급을 책정하고 있다.

과 관련한 사안에 있기 때문에, 동 조사는 가계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현금흐름이 보고되기는 하나, 원리금 상환금액 총액만이 제공될 뿐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지 않은 채 보고되고 있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인한 현금흐름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과거의 도시가계조사가 확대된 것으로서, 2008년 조사 명칭이 가계동향조사로 변경되었다. 가계동향조사는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비용을 별도로 보고하고 있어 금융부채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는 본 연구의 분석 목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첫째, ‘가계동향조사’는 유량변수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가계의 자산액과 부채액과 같은 저장변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노동패널조사’와 달리 동 조사는 패널자료로 작성되지 않아서, 개별 가계의 시계열 변동과 그에 따른 행태 분석에 적절하지 않다.

이에 비하여 2012년부터 새로 개편되어 작성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금융과 관련해서 자산액 및 부채액과 같은 저장변수는 물론이고 이자비용, 원금상환액 및 재산소득과 같이 자산과 부채 보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자료는 그 전신격인 가계금융조사는 물론이거니와 2011년까지 작성된 가계금융조사와 구성과 표본 등이 달라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노동패널조사’와 ‘가계동향조사’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가계의 소득 및 부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이유는 시계열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동 자료가 패널자료로서 개별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및 부채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개별 가계별로 부채로 인한 현금흐름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가계의 금융부채 현황 및 그것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다만, 시계열이 3개년도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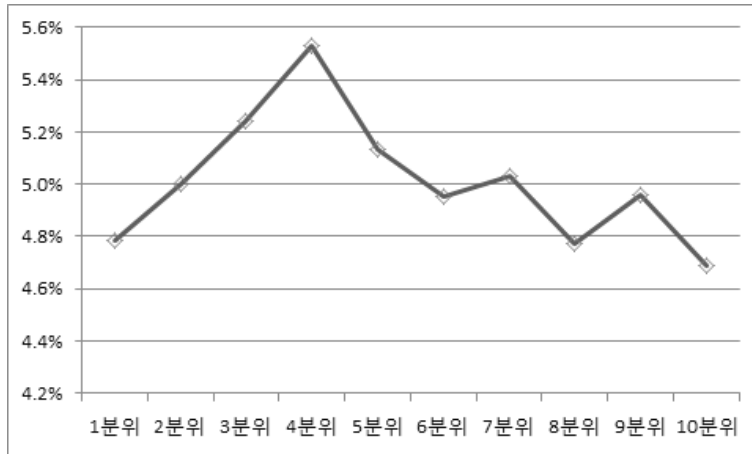
그런데 이 자료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서베이 자료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서베이 자료가 응답자의 답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답변 정확성에 따라 자료의 신뢰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금액이나 가격 변화가 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달리 답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보고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보고는 답변자가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

공할 유인이 높다. 특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관련한 저량변수와 달리 이자 및 재산소득과 같은 유량변수는 정확성의 문제가 더욱 우려된다. 금리 및 시장가격 변화로 인하여, 그리고 금융자산 및 부채 잔액의 연간 변동성으로 인하여 연간 단위로 정확한 재산소득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하기는 실제 쉬운 일이 아니다. 같은 유량변수라고 하더라도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연간 단위의 소득 정보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정확성이 훨씬 높으나, 이자비용은 응답자가 금융기관별로 별도로 계산하고 집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확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단 금융부채 금액과 이자비용의 정보 간에 일관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금융부문 조사의 표본 가구 수는 총 9,080가구였다. 그런데 가령 2013년 금융부채의 존재를 보고한 가구 중에서 1,043가구가 이자비용이 없다고 보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 자료가 2012년 동안의 소득 항목을 기입한 것인 반면 금융부채 잔액은 2013년 3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두 항목 간에 시차가 존재하여 이러한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들 가구가 2012년 3월말 현재 금융부채 잔액이 있었는지도 동시에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 중 387개의 가구는 2012년 3월말 현재 금융부채 잔액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이들 가구가 2013년 1월 이후 금융부채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이들 가구의 답변이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656 가구는 2012년에도 금융부채가 존재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적어도 이들 가구는 이자비용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게 보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특히 이자비용의 정확성 여부에 대하여 보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소득계층별로 금융부채가 존재하는 차입가구만을 대상으로 2013년 3월말 금융부채 잔액 대비 이자비용을 차입금리로 정의하고 계산해보았다(그림 1 참조). 물론 평잔 기준이 아니며 소득측정 기간과 부채 측정일자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소득계층별로 평균적으로 유사한 오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소득계층별 차입금리는 상호 비교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가 높은 신용등급을 평균적으로 갖고 있음을 전제할 때, 등급이 높아질수록 신용가산금리가 낮아져서 차입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미리 짐작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듯이 차입금리는 1분위에서부터 4분위까지 사이에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이자지급액을 과소 보고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부채가구의 소득계층별 차입금리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이러한 두 가지 점검 사항을 볼 때, 이자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서 이자지급액이 축소 보고될 가능성 역시 크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⁸⁾.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소득계층별 분해와 분석을 실시한 것은 이자비용이 없다고 보고한 상당수의 자료가 금융부채액이 매우 크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평균적인 수치를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그 오류가 희석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된 분석 대상을 이자비용 여부를 기준으로 정의한 차입가구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자비용 누락에 따른 표본의 문제를 가능한 축소할 수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이자비용을 과소 보고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 자료를 기초로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로 인한 문제를 지적할 경우 적어도 그 결론이 저소득층 금융부채의 심각성을 과대 보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또 하나의 이유였다.

한편, 가계복지조사에 존재하는 모든 표본을 이용하여 금융부채와 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발생하는 문제의 하나는 소득분위 중 하위에 있는 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10분위로 소득을 구분할 경우 1, 2분위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서 다른 소득분위의 가구주의 평균 연령과 차이가 존재한다. 이처럼 평균 연령이 높을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소득분위에 비하여 금융부채를 차입하는 가구 역시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⁹⁾.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적어도 금융부

8) 이러한 보고 누락 가능성은 자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재산소득을 자산 또는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자산수익률을 계산하더라도 일관된 수치를 얻을 수 없었다.

채와 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는 노령층 가구를 배제하는 것이 분석 자료로 인한 편의를 제거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가계복지조사의 가구 중에서 가구주가 65세를 넘어서는 가구를 배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65세 이하의 가구주가 존재하는 표본 중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3개년 동안 분석 자료가 존재하는 6,460가구가 되었다.

4.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보유 특성 현황

소득계층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였다. 우선 모든 소득 범주는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된 소득을 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균등화된 소득을 기초로 각 가구를 10분위로 구분하였다¹⁰⁾.

다음의 [표 1]은 2012년의 소득분위별 경상소득과 자산 및 부채 보유에 관한 연도별 평균치를 정리한 것이다. 각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을 보면 1분위가 49.6세로서 다른 분위에 비하여 높지만, 그 연령 격차가 2-4년 정도에 불과하여 연령을 통제할 경우 연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소득분위별 격차 효과는 상당히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소득은 분석 가구 전체 평균이 4,868만 원이었으며,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1분위 소득은 944만 원으로서 65세 이상 가구를 포함할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1분위 소득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전체 자산액과 부채액은 평균적으로 각각 경상소득의 6.8배, 1.2배였으며, 금융부채액은 경상소득 대비 0.82배였다.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 2분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3~9분위까지는 다소 낮아지나 가장 높은 소득분위인 10분위에서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요컨대 소득이 낮은 1,2분위가 소득 대비 높은 금융부채 차입 비용에 노출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소득분위별 차이는 총부채의 경상소득 대비 비율을 보더라도 유사한 양상이었다.

9) 2012년과 2013년 두 해 동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10분위로 구분할 때, 하위 소득 1분위 및 2분위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각각 70세 및 61세였으며, 이들 중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1분위의 경우 21.7%, 2분위의 경우 39.7%였다. 이러한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중은 다른 분위의 경우 최소 69%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격한 낮은 수준이다.

10) 통상적으로 가구가중치를 부여하여 소득분위를 구분하나, 본 연구에서는 가구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소득분위를 구분하였다.

[표 1] 소득분위별 경상소득과 자산 및 부채(2012년)

항목	가구주 연령(세)	경상소득(만 원)	자산/경상소득	부채/경상소득	금융부채/경상소득
1분위	49.6	994	7.79	1.52	1.26
2분위	46.0	1,885	6.30	1.44	1.17
3분위	45.3	2,510	6.14	1.11	0.77
4분위	44.8	3,092	5.92	0.99	0.78
5분위	44.2	3,647	5.90	1.07	0.83
6분위	45.3	4,299	6.74	0.99	0.79
7분위	44.4	5,028	6.09	1.04	0.73
8분위	45.6	6,156	6.31	1.12	0.76
9분위	45.2	7,674	6.73	1.18	0.77
10분위	47.4	13,225	7.83	1.28	0.85
전체	45.8	4,868	6.78	1.16	0.82

자료: 통계청,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한편 금융부채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전년대비 10.8%,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전년대비 5.7%, 5.1%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동 기간 동안 금융부채가 훨씬 급격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2년 82%에서 2014년 88%로 증가하여, 가계의 금융부채 상환부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비중(2012년)

항목	금융부채/부채	금융부채/자산	금융부채/금융자산	금융부채/순자산
1분위	82.5%	16.1%	61.3%	20.1%
2분위	81.0%	18.5%	67.2%	24.0%
3분위	69.4%	12.5%	45.0%	15.2%
4분위	78.4%	13.2%	42.9%	15.8%
5분위	77.9%	14.1%	49.8%	17.3%
6분위	79.7%	11.7%	43.7%	13.7%
7분위	70.6%	12.0%	41.4%	14.5%
8분위	67.7%	12.0%	41.0%	14.6%
9분위	65.2%	11.4%	41.2%	13.9%
10분위	66.0%	10.8%	38.4%	12.9%
전체	70.3%	12.1%	42.7%	14.6%

자료: 통계청,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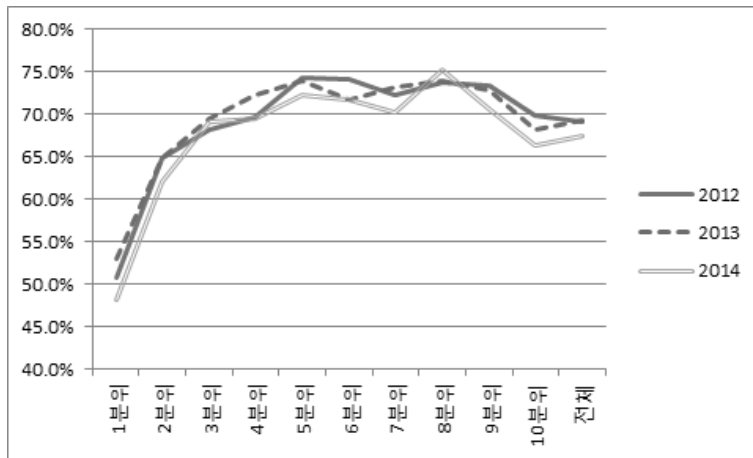
금융부채의 소득분위별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표 2 참조). 금융부채는 전체 부채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부채에서 차지하는 금융부채 비중은 하락하였다. 이것은 금융부채 이외의 부채 대부분이 임대보증금인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고소득일수록 부동산자산 임대 금액이 큰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 금융자산 또는 순자산(=자산-부채) 대비한 금융부채 비중 역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2012년과 비교할 때, 각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금융부채가 자산, 금융자산 또는 순자산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자산까지 고려할 때 가계 금융부채로 인하여 가계가 전반적으로 지급불능에 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가계부채의 문제가 우려될 바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첫째, 가계 대부분이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이 발생한다면 가계의 자산이 부채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하는 지급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된다. 둘째, 한편에서는 만기가 짧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일시적인 상환요구가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계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잠재적 우려는 모두 가계가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최근 정부의 LTV나 주택담보대출 장기화 정책은 바로 이러한 가계부채의 부실화 우려에 대한 방지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는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령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가계부채의 증가가 커다란 사회경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과도한 가계부채가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과 소비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의 금융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큰 악영향을 준다면, 비록 가계 파산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의 복리후생은 더욱 악화되고 소득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계의 금융부채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인해서 연간 가계가 얻는 소득에서 차감되며, 따라서 가계는 그 부담만큼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미래에 감소하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금융부채 증가는 차입 당해에는 현금유입으로 나타나겠지만 이후에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가계의 실질적인 후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가계의 금융부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지급액 및 원금상환액이 소득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자지급액은 그 전액이 가계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원금상환액은 그 전액이 모두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나타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만기에 달하여 원금상환이 요구되는 대출 대부분에 대해서 만기연장이 이루어졌으며, 자산매각 등을 통해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소득으로부터의 현금유출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 방식이 만기일시 상환대출인지 아니면 원금분할 상환대출인가에 따라서도 그 현금흐름이 달라지며, 대출의 만기에 따라서도 매년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원금상환액의 금액만을 보고 일률적으로 원금상환액이 실질적으로 소득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다만 원금상환액에 따른 부담은 원금상환액으로 인한 소득으로부터의 최대 유출액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림 2] 소득계층별 차입가구비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분석은 이자비용 유무를 기준으로 차입가구와 비차입가구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차입가구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금융회사로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부채 보유비율이 낮다([그림 2] 참조). 2014년의 경우 1, 2분위 중에서 금융부채를 차입한 가구의 비율은 각각 48.2%, 62.1%로 다른 분위의 차입가구 비율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이자부담액이나 원금상환액 부담을 측정하거나 소득분위별로 그 부담의 정도를 비교할 경우, 비차입가구로 인하여 금

용부채로 인한 부담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하의 통계적 분석에서는 차입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차입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이자비용 보고 여부로 분석 대상 가구를 차입가구와 비차입가구를 구분하고, 그 특성을 간단히 비교한 것이다. 총 분석대상 가구 6,460 가구 중에서 차입가구와 비차입가구는 각각 4,363가구, 2,097가구였다. 차입가구 연령이 비차입가구 연령보다 평균 1.5세 낮았는데, 특히 1분위 저소득가구의 경우 비차입가구의 연령이 차입가구보다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상소득은 차입가구가 비차입가구보다 전체적으로도 모든 소득분위에서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자산 역시 전체적으로 차입가구가 비차입가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서 상환여력이 높은 가구가 금융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차입가구와 비차입가구의 비교(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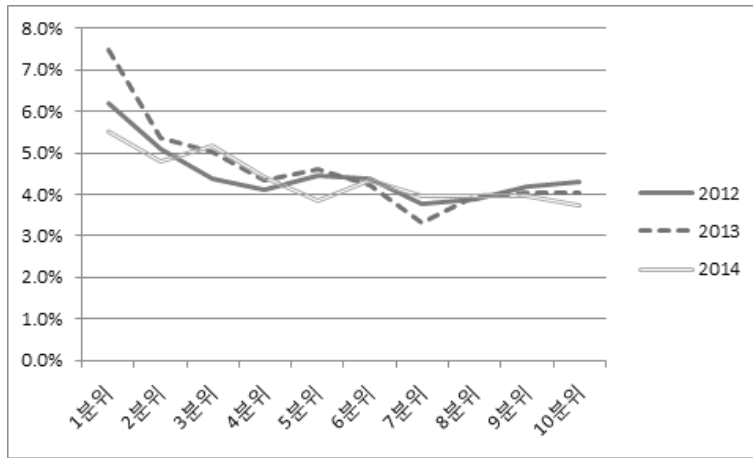
항목	가구주 연령(세)		경상소득(만 원)		자산(만 원)	
	차입가구	비차입가구	차입가구	비차입가구	차입가구	비차입가구
1분위	47.9	51.4	1,111	874	9,380	6,058
2분위	45.5	46.9	1,992	1,688	12,926	9,920
3분위	45.0	45.9	2,600	2,317	15,686	14,831
4분위	44.0	46.5	3,182	2,887	17,869	19,257
5분위	44.1	44.5	3,741	3,376	21,901	20,405
6분위	44.8	46.5	4,405	3,995	28,610	30,033
7분위	44.7	43.7	5,154	4,698	32,142	26,677
8분위	45.4	46.1	6,258	5,869	38,490	39,891
9분위	45.1	45.6	7,757	7,448	53,100	47,633
10분위	47.2	47.8	13,422	12,767	103,102	104,683
전체	45.3	46.8	5,123	4,296	34,332	29,994

자료: 통계청,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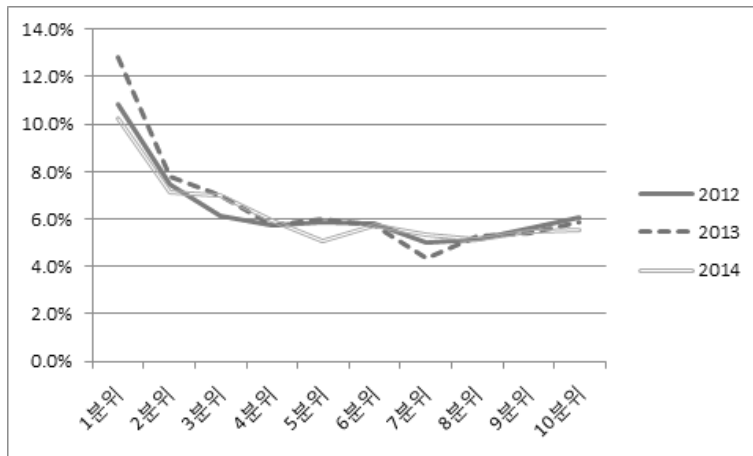
이제 경상소득 대비 이자지급액 및 경상소득 대비 원금상환액을 각각 이자부담률과 원금부담률로 정의한다. 그리고 경상소득에서 이자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은 이자차감 가처분 소득으로, 경상소득에서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원리금차감 가처분소득으로 정의한 후 이들 지표를 중심으로 금융부채의 소득분위별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3] 소득계층별 이자부담률

a. 전체가구 기준



b. 차입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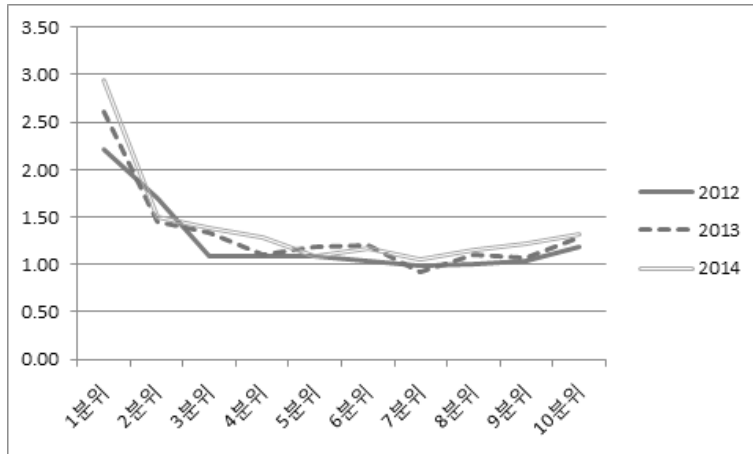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3]은 이자부담률을 전체 가구 및 차입가구를 대상으로 연도별로 도시한 것이다. 일단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계산할 경우에 비하여 차입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자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입가구 전체적으로 이자부담률은 연도별로 5.8%, 5.8%, 5.7%를 기록하여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자부담률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해보면, 다른 소득분위에 비하여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의 이자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의 경우 1분위의 이자부담률은 10.2%로서 가장 높았으며, 2, 3분위도 각각 7.1%, 7.0%로서 여타 소득계층보다 최소 1% 이상 높은 이자부담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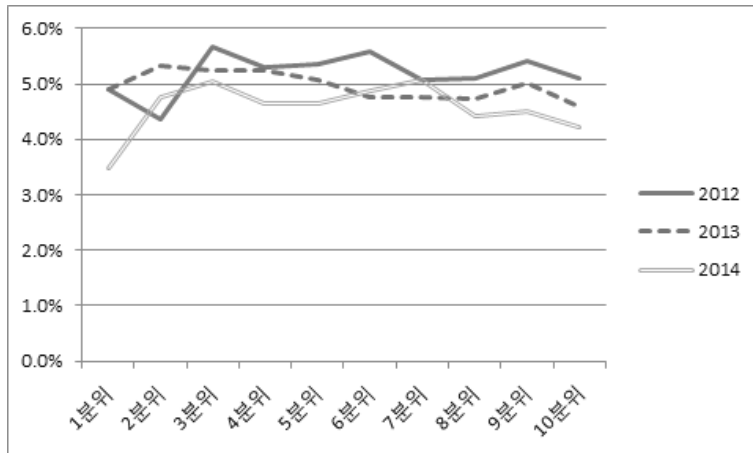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자부담률은 경상소득 대비 부채 비율과 차입금리(=부채금액 대비 이자지급액)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림 4] 소득계층별 경상소득 대비 부채비율(차입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5] 소득계층별 차입금리(차입가구 기준)



* 차입금리=이자지급액/부채금액.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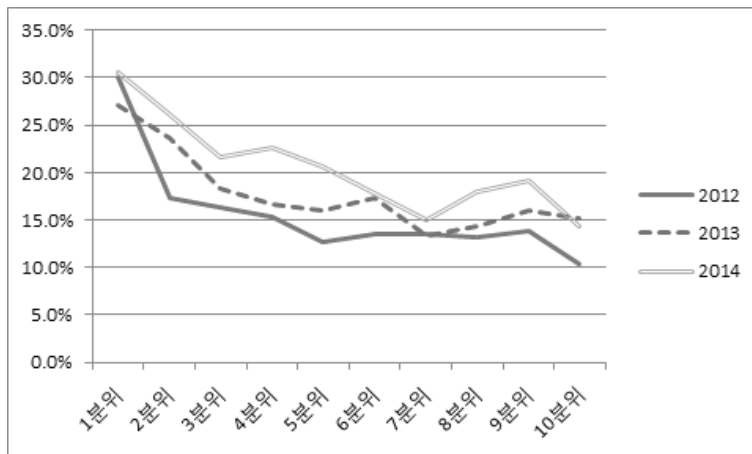
[그림 4]와 [그림 5]는 두 요소 각각을 소득계층별로 도시한 것이다. 그런데 차입금리는 저소득층인 1, 2분위가 다른 소득계층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앞서 [그림 1]의 사

례와 동일하게 저소득층의 이자지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소보고 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그리고 최근 금리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자부담률이 감소하지 않았던 것은 금리하락에 반비례하여 부채가 경상소득 대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각 연도별 평균 차입금리는 5.2%에서 4.9%, 4.5%로 하락해왔으나, 대신 경상소득 대비 부채는 2012년 1.12배에서 2013년과 2014년 각각 1.19배, 1.25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가 8.9분위보다 이자부담률이 높은 이유도 차입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부채 배수가 크기 때문이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소득계층별 이자부담률 차이는 부채 비율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비교 결과는 하위계층의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의 원인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위계층이 부채 비율이 높은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림 6]은 경상소득 대비 원금상환액 비율, 곧 원금부담률을 소득계층별로 도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원금부담률은 2012년 13.3%에서 2013년 및 2014년 각각 16.0%, 18.1%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원금부담률이 높았다. 1분위의 경우 2014년 원금부담률은 30.6%로서, 이는 만약 재차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해연도 소득의 30%가 원금상환에 이용됨으로써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에는 경상소득 대비 원금상환액이 14.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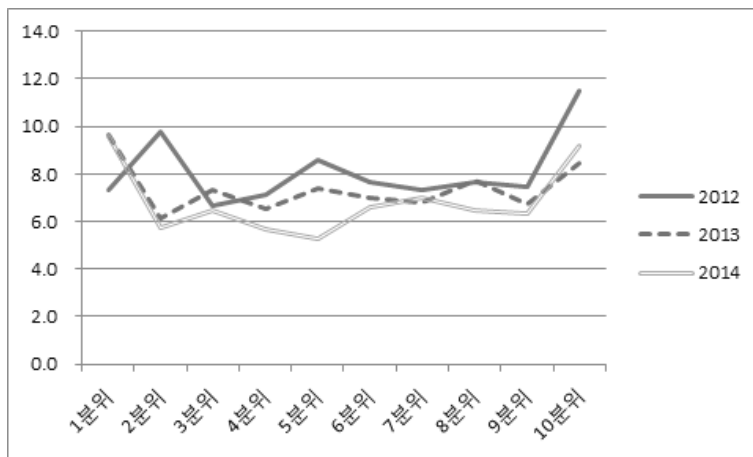
[그림 6] 소득계층별 원금부담률 (차입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이처럼 원금부담률이 연도별로 또는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으로는 경상 소득 대비 부채 금액이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이것 외에도 대출 조건, 가령 대출만기나 원금 상환조건 등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우리는 가구의 금융부채액 대비 원금상환액을 구한 이후 그 역수를 취하여 가구가 차입한 금융부채의 만기를 추정해보았다(그림 7). 일단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원금상환액이 과소 보고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1분위 계층의 2014년 금융부채의 추정 만기는 9.6년으로서 다른 소득분위보다 길게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요인을 배제할 때 이자지급액과 마찬가지로 원금상환액이 저소득층의 경우 과소 보고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소득계층별 보고의 정확성 문제를 차치하고 본다면, 금융부채의 추정 만기는 계속 축소하여 2012년 8.5년에서 2013년과 2014년 각각 7.4년과 6.9년으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계약상의 만기가 축소되지 않는 정황을 고려할 때, 이처럼 상환금액을 감안하여 추정된 실제 만기가 짧아진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방식이 지난 몇 년 간 원금일시상환방식에서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상당히 전환한데 따른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원금상환구조를 장기에 걸쳐 평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에 힘입은 바 크다. 유동성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동 정책의 타당성이 존재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원금분할상환으로 인하여 조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그림 7]은 상기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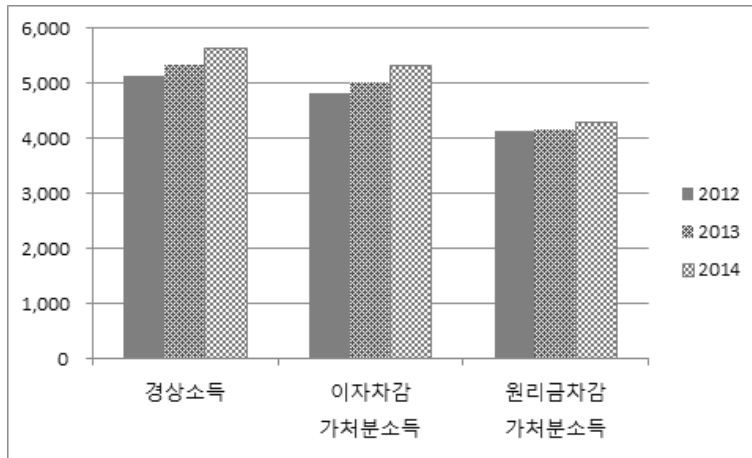
[그림 7] 소득계층별 부채 추정 만기(차입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은 이러한 원금의 장기적 분할상환 구조 자체를 위협의 감소로 해석하여 가계부채 확대를 허용하는 경우일 것이다. 장기 분할상환대출의 확대가 총량적으로는 가계의 상환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장기에 걸쳐 평탄화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계가 생애 전체에 부담하는 금융부채 부담을 경감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가계의 금융부채 확대를 용인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가계의 미래 가처분소득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림 8]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추이(차입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8]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상소득 및 이자 또는 원리금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3개년에 불과했지만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 또는 원리금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의 증가세가 경상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소득계층별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이자부담률 및 원금부담률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경상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 수준보다는 이자 및 원금 부담을 감안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이 훨씬 클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소득분배지수로서 지니계수와 에스테반-레이(Esteban-Ray) 지수를 이용하여 금융부채 부담을 감안한 소득분배 불평등도 변화를 살펴보았다¹¹⁾. 계산을 위한 계층별 분류는 10분위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소득계층을 세분화하지 않음으로써 발

11) 에스테반-레이 지수에 대해서는 Esteban & Ray(1994)와 신동균·전병유(2005) 참조.

생하는 지수 추정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금융부채 부담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상의 오류가 소득유형별 소득분배지수 간의 비교 결과를 크게 왜곡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지수계산은 차입가구를 포함한 분석대상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때 에스테반-레이 지수는 알파 값을 1.3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표 4]는 도출된 소득분배지수를 정리한 것이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지니계수는 2012년에 비하여 2014년에 미약하지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자지급액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여전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개선도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는 매우 작았다. 반면 원금상환액을 포함한 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한 지니계수는 2013년, 2014년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0.3977이었던 지니계수는 2013년 0.4177, 2014년 0.4426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와 원리금차감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의 격차도 확대되었다. 2012년의 경우 양자의 격차는 0.038 이었으나, 2014년에는 0.0881로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양극화지수인 에스테반-레이 지수를 산출해도 마찬가지로의 결과였다. 이처럼 2012년에 비하여 2014년 원리금차감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 지수가 크게 악화된 것은 부채 증가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러한 소득분배지수의 산출 결과는 금융부채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소비에 이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의 소득불평등도를 확대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소득분배지수

a. 지니계수

기준	2012년	2013년	2014년
경상소득	0.3580	0.3581	0.3534
(경상소득-이자지급액)	0.3586	0.3630	0.3581
(경상소득-원리금상환액)	0.3968	0.4167	0.4415

b. 에스테반-레이 지수

기준	2012년	2013년	2014년
경상소득	0.3556	0.3592	0.3544
(경상소득-이자지급액)	0.3597	0.3637	0.3591
(경상소득-원리금상환액)	0.3977	0.4177	0.4426

* 에스테반-레이 지수는 알파값을 1.3으로 하여 산정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5. 금융부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제4절에서 가계의 금융부채 증가로 인한 원리금 지급 부담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불평등이 최근 악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향상소득가설에 의한다면 가계의 차입은 미래의 기대소득을 현재 소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소비 평탄화의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는 부채비율이 낮은 가계에 비하여 미래의 소득이 높아야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계가 미래의 기대소득과 무관하게 금융부채를 증가시킨다면, 그 가계의 미래 가처분소득은 축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따라서 만약 금융부채의 보유 동기가 소득계층별로 달라진다면 현재의 금융부채 증가가 미래의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도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소득 개선이 어려운 소득 하위층이 금융부채를 확대했다고 한다면, 그 가처분소득이 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에 비하여 미래에 더욱 하락함으로써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난 3년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이 확대된 것이 바로 소득계층별로 금융부채를 차입한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금융부채와 미래소득 간의 관계에 대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우선 가계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가계의 소득을 결정하는 차입자의 특성 변수로서는 연령이나 교육 등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변수를 시차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연도변수 더미와 함께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자산이 경상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설명변수로서 t 기의 경상소득 대비 금융자산 비율($Asset Ratio_{i,t}$)을 모형에 추가하였다. 끝으로 t 기의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Debt Ratio_{i,t}$)을 추가하여 식 (1)과 같은 소득결정 요인 추정식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를 경상소득과 함께 경상소득에서 이자비용을 차감한 이자차감 가처분소득($INTIncome_{i,t+1}$)과 경상소득에서 원리금지급액을 차감한 원리금차감 가처분소득($IPIncome_{i,t+1}$)으로 바꾸어 추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식 (1)이 절대적인 소득 기준임을 감안하여 상대적 소득으로 종속변수를 바꾸어 추정을 실시하였다. 중위층을 전체 소득 중간값의 50% 내지 150%에 속하는 가구로 정의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개별 가구의 연도별 경상소득을 연도별 경상소득 중간값으로 나누어 상대소득비율

($RIncome_{i,t+1}$)로 정의하였다. 가처분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대소득비율을 정의하여 (식 2) 내지 (식 2'')까지의 추정식을 설정하였다.

$$Income_{i,t+1} = constant + Year Dummy + Age_{i,t} + (Age^2)_{i,t} + Education_{i,t} + Asset Ratio_{i,t} + Debt Ratio_{i,t} \quad (1)$$

$$INTIncome_{i,t+1} = constant + Year Dummy + Age_{i,t} + (Age^2)_{i,t} + Education_{i,t} + Asset Ratio_{i,t} + Debt Ratio_{i,t} \quad (1')$$

$$IPIncome_{i,t+1} = constant + Year Dummy + Age_{i,t} + (Age^2)_{i,t} + Education_{i,t} + Asset Ratio_{i,t} + Debt Ratio_{i,t} \quad (1'')$$

$$RIncome_{i,t+1} = constant + Year Dummy + Age_{i,t} + (Age^2)_{i,t} + Education_{i,t} + Asset Ratio_{i,t} + Debt Ratio_{i,t} \quad (2)$$

$$RINTIncome_{i,t+1} = constant + Year Dummy + Age_{i,t} + (Age^2)_{i,t} + Education_{i,t} + Asset Ratio_{i,t} + Debt Ratio_{i,t} \quad (2')$$

$$RIPIncome_{i,t+1} = constant + Year Dummy + Age_{i,t} + (Age^2)_{i,t} + Education_{i,t} + Asset Ratio_{i,t} + Debt Ratio_{i,t} \quad (2'')$$

$Income_{i,t+1}$: t+1기의 경상소득, $INTIncome_{i,t+1}$: t+1의 경상소득에서 t+1의 이자지급액 차감

$IPIncome_{i,t+1}$: t+1의 경상소득에서 t+1의 원리금상환액 차감,

$RIncome_{i,t+1}$: t+1기의 경상소득/t+1기의 전체 표본 경상소득의 중간값,

$RINTIncome_{i,t+1}$: t+1기의 이자차감 가처분소득/t+1기의 전체 표본 이자차감 가처분소득의 중간값, $RIPIncome_{i,t+1}$: t+1기의 원리금차감 가처분소득/t+1기의 전체 표본 원리금차감 가처분소득의 중간값,

$Year Dummy$: 연도 더미, $Age_{i,t}$: 차입자 연령, $Education_{i,t}$: 교육 수준. $Asset Ratio_{i,t}$: 경상소득 대비 금융자산 비율, $Debt Ratio_{i,t}$: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추정은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이용하였다. [표 5]는 추정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절대적인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연령은 소득에 비례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할 때 소득의 증가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은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추정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 및 교육과 소득 간의 관계는 상대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반면 전기의 금융자산 비율은 절대적인 소득 수준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대소득을 기준으

로 할 경우에는 일부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금융자산비율과 상대소득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5] 가구 소득의 결정 요인

a. 절대 소득

Variables	$Income_{i,t+1}$		$INTIncome_{i,t+1}$		$IPIncome_{i,t+1}$	
	<i>constant</i>	-11384.9*** (-12.13)	-11384.4*** (-12.13)	-10589.6*** (-11.65)	-10589.5*** (-11.65)	-9174.6*** (-9.54)
<i>Year Dummy</i>	127.8*** (4.35)	127.7*** (4.35)	127.3*** (4.34)	127.2*** (4.33)	-34.78 (-0.84)	-33.38 (-0.81)
$Age_{i,t}$	465.7*** (11.21)	465.6*** (11.21)	426.4*** (10.59)	426.4*** (10.59)	329.2*** (7.71)	329.9*** (7.73)
$(Age^2)_{i,t}$	-4.33*** (-9.49)	-4.33*** (-9.49)	-3.93*** (-8.89)	-3.93*** (-8.89)	-2.84*** (-6.07)	-2.85*** (-6.09)
$Education_{i,t}$	1031.7*** (27.99)	1031.8*** (27.99)	1012.3*** (28.33)	1012.3*** (28.34)	1020.2*** (26.87)	1020.0*** (26.88)
$Asset Ratio_{i,t}$	2.09 (1.45)	2.01 (1.36)	2.16 (1.50)	2.10 (1.43)	0.12 (0.06)	1.56 (0.77)
$Debt Ratio_{i,t}$	-	0.13 (0.30)	-	0.08 (0.19)	-	-2.15*** (-3.74)
Adj R2t	0.072	0.072	0.073	0.073	0.059	0.060

b. 상대 소득

Variables	$RIncome_{i,t+1}$		$RINTIncome_{i,t+1}$		$RIPIncome_{i,t+1}$	
	<i>constant</i>	-2.647*** (-11.95)	-2.647*** (-11.95)	-1.955*** (-9.28)	-1.955*** (-9.28)	-2.265*** (-9.41)
<i>Year Dummy</i>	-0.063*** (-9.09)	-0.063*** (-9.09)	-0.274*** (-34.38)	-0.275*** (-34.39)	-0.086*** (-8.41)	-0.086*** (-8.38)
$Age_{i,t}$	0.110*** (11.22)	0.110*** (11.22)	0.086*** (9.18)	0.086*** (9.18)	0.083*** (7.75)	0.083*** (7.77)
$(Age^2)_{i,t}$	-0.001*** (-9.50)	-0.001*** (-9.50)	-0.0008*** (-7.58)	-0.0008*** (-7.58)	-0.0007*** (-6.11)	-0.0007*** (-6.13)
$Education_{i,t}$	0.243*** (27.98)	0.243*** (27.99)	0.214*** (25.76)	0.214*** (25.76)	0.255*** (26.86)	0.255*** (26.87)
$Asset Ratio_{i,t}$	0.0005* (1.69)	0.0005 (1.58)	0.0007* (1.78)	0.0007* (1.66)	0.0001 (0.24)	0.0005 (0.92)
$Debt Ratio_{i,t}$	-	0.00004 (0.39)	-	0.00005 (0.45)	-	-0.0005*** (-3.57)
Adj R2t	0.068	0.068	0.119	0.119	0.061	0.062

금융부채비율은 절대소득 및 상대소득 기준으로 할 경우 모두에서 정상소득 및 이자차감 가처분소득과는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리금차감 가처분소득과 금융부채비율은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절대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나 상대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이 자체만을 갖고 현재의 금융부채비율이 미래의 소득 수준을 결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평균적으로 볼 때 개인의 정상소득이 급속히 변화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러한 추정 결과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금융부채로 인한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금융부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기의 금융부채 비율과 현재의 소득수준 변동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경우 소득변동치의 절대값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커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소득 수준의 변동치보다는 상대소득 수준의 변동치로 그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금융부채비율이 상대적인 소득 수준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앞서 정의한 상대소득비율은 전체소득의 중간값에 대비한 개별 가계소득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가계의 상대소득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해당 가계 소득이 전체적인 소득 수준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만약 금융부채가 해당 가계소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금융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다음 연도에 상대소득비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상대소득비율의 변동치($Diff_RIncome_{i,t+1} = RIncome_{i,t+1} - RIncome_{i,t}$)를 계산하고, 이 변동치와 전기의 금융부채비율간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금융부채비율이 소득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추정은 나머지 두 소득 지표, 곧 이자차감 가처분소득 및 원리금차감 가처분소득을 이용해서도 동일하게 변동치를 산출하여 실시하였다.

[표 6]은 그 추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동 추정은 연간 소득변동치에 미치는 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본 것이므로, 앞서 [표 5]의 추정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개별 가계별 소득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교육수준이 특정 연도에서의 소득증가율 변화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앞서 추정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소득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 6]에서는 연간 소득증가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자산비율은 정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소득비율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자차감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원리금차감 가처

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자산비율이 높은 가계가 상대소득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것은 금융자산비율이 높은 가계가 금융부채 역시 높은 경향이 있음에 따른 것이 아닌가 추론한다.

[표 6] 부채 비율과 상대소득비율의 변동

Variables	$Diff_RIncome_{i,t+1}$	$Diff_RINTIncome_{i,t+1}$	$Diff_RIPIncome_{i,t+1}$
<i>constant</i>	0.266** (2.13)	0.632*** (4.22)	0.365** (2.08)
<i>Year Dummy</i>	-0.055*** (-4.53)	-0.244*** (-16.79)	-0.046*** (-2.72)
<i>Age_{i,t}</i>	-0.007 (-1.32)	-0.018*** (-2.71)	-0.012* (-1.56)
$(Age^2)_{i,t}$	0.00005 (0.87)	0.0001** (2.11)	0.0001 (1.24)
<i>Education_{i,t}</i>	-0.005 (-1.07)	-0.031*** (-5.27)	-0.010 (-1.49)
<i>Asset Ratio_{i,t}</i>	0.001*** (2.71)	0.002*** (2.84)	-0.001** (-2.07)
<i>Debt Ratio_{i,t}</i>	0.00007 (0.51)	0.0001 (0.87)	-0.0004** (-2.31)
Adj R2t	0.004	0.036	0.002

단, $Diff_RIncome_{i,t+1} = RIncome_{i,t+1} - RIncome_{i,t}$,
 $Diff_RINTIncome_{i,t+1} = RINTIncome_{i,t+1} - RINTIncome_{i,t}$,
 $Diff_RIPIncome_{i,t+1} = RIPIncome_{i,t+1} - RIPIncome_{i,t}$

금융부채비율과 상대소득비율 변동치 간에도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융부채비율은 유의성은 떨어지나 경상소득 및 이자차감 가처분소득과는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원리금차감 가처분소득과는 5% 유의수준에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가구가 부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예상되는 소득 증가보다는 부채 증가로 인한 원리금 지급 금액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채를 증가시킨 가구가 예상하는 소득보다 원리금 지급 금액이 커서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하락하게 된 것으로 추정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추정 결과만으로 금융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상대적으로 미래의 높은 소득을 기대하고 차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가능성, 곧 항상소득가설에 의거한 금융부채가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금융부채를 통해서 나타나는 소득 증가효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만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차감 가치분소득이 금융부채비율이 높은 가계에서 그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증가가 가계의 원리금부담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소비에 이용할 수 있는 가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부채의 소득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적어도 금융부채 증가로 인한 가치분소득의 감소가 확인되는 셈이다.

이제 가계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부채비율이 상대소득비율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중위층을 소득 중간값의 50% 내지 150%에 포함되는 가구로 정의하는 것을 감안하여, 50% 미만의 소득자를 하위층, 50% 이상 150% 미만의 소득자를 중위층, 150% 이상 소득자를 상위층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더미값을 부여하고 이러한 더미변수에 부채비율을 곱한 더미곱변수를 생성하여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표 7] 소득군별 부채 비율과 상대소득비율의 변동

Variables	$Diff_RIncome_{i,t+1}$	$Diff_RINTIncome_{i,t+1}$	$Diff_RIPhcome_{i,t+1}$
<i>constant</i>	0.273** (2.19)	0.650*** (4.36)	0.336* (1.92)
<i>Year Dummy</i>	-0.056*** (-4.61)	-0.245*** (-16.96)	-0.047*** (-2.77)
$Age_{i,t}$	-0.009* (-1.59)	-0.020*** (-3.09)	-0.012 (-1.53)
$(Age^2)_{i,t}$	0.00007 (1.18)	0.0002*** (2.52)	0.0001 (1.26)
$Education_{i,t}$	-0.004 (-0.76)	-0.030*** (-4.96)	-0.007 (-0.97)
$Asset\ Ratio_{i,t}$	0.001*** (2.80)	0.002*** (2.96)	0.001** (2.04)
$Grade\ High_{i,t} \times Debt\ Ratio_{i,t}$	-0.010 (-1.32)	-0.008 (-0.92)	-0.037*** (-3.41)
$Grade\ Mid_{i,t} \times Debt\ Ratio_{i,t}$	0.031*** (6.33)	0.048*** (8.26)	0.009 (1.36)
$Grade\ Low_{i,t} \times Debt\ Ratio_{i,t}$	0.00005 (0.40)	0.0001 (0.71)	-0.0004** (-2.30)
Adj R2t	0.008	0.044	0.004

$Grade\ High_{i,t}$: t기 전체소득 중간값의 150%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Grade\ Mid_{i,t}$: t기 전체소득 중간값의 50% 이상 1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Grade\ Low_{i,t}$: t기 전체소득 중간값의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앞의 [표 7]은 그에 따른 추정 결과이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소득분위에 따라 금융부채가 차기년도 소득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중위층의 경우에는 금융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차기년도의 상대소득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상위층과 하위층은 금융부채비율이 유의하게 상대소득비율 증가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이자차감 가치분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적어도 중위층의 경우에는 금융부채비율 증가가 상대소득비율을 증가시키는데 유의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상위층과 하위층에서는 금융부채가 미래의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효성을 보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금융부채가 많은 가계가 미래의 소득 증가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차별화된 양태는 원리금상환 부담을 감안한 가치분소득 증가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로 나타난다. 즉 원리금차감 가치분소득을 기준으로 금융부채비율과 상대소득비율 변동치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상위층과 하위층은 금융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차년도 상대소득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금융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이들 계층에서는 가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하락함을 의미한다. 중위층의 경우에도 원리금부담을 감안할 경우 금융부채 증가가 실질적인 가치분소득 증가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면 상위층과 하위층, 특히 하위층에서 원리금차감 가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금융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상대소득비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경상소득의 변화는 금융부채비율보다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소득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로 분리한 이후, 각각의 상황에서 금융부채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부담이 가치분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금융부채로 인한 가치분소득의 변화를 분석해볼 수도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소득비율 변동치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한 더미변수를 [표 7]에서 설명변수로 이용된 더미곱변수에 추가로 곱하여 추정을 다시 실시하였다. 즉 각 소득계층별로 상대소득비율이 증가한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를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이 더미변수와 (1-더미변수)를 각각 기존의 더미곱 변수에 곱하여 각 소득계층별로 금융부채비율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두 개의 변수를 생성하여, 그 추정 결과를 [표 8]에 정리하였다.

[표 8] 소득계층별 부채 비율과 상대적 소득 증가

Variables	$Diff_RIncome_{i,t+1}$	$Diff_RINIncome_{i,t+1}$	$Diff_RIPIncome_{i,t+1}$
<i>constant</i>	0.258** (2.21)	0.629*** (4.43)	0.323* (1.89)
<i>Year Dummy</i>	-0.041*** (-3.62)	-0.231*** (-16.75)	-0.033** (-2.01)
$Age_{i,t}$	-0.008 (-1.59)	-0.020*** (-3.14)	-0.011 (-1.50)
$(Age^2)_{i,t}$	0.00007 (1.17)	0.0002** (2.55)	0.0001 (1.24)
$Education_{i,t}$	-0.005* (-1.13)	-0.031*** (-5.43)	-0.008 (-1.20)
$Asset Ratio_{i,t}$	0.001*** (2.81)	0.002*** (2.99)	0.001** (1.98)
$Income_Dummy_{i,t+1}$ $\times Grade High_{i,t} \times Debt Ratio_{i,t}$	0.237*** (20.98)	0.229*** (16.69)	0.196*** (11.83)
$Income_Dummy_{i,t+1}$ $\times Grade Mid_{i,t} \times Debt Ratio_{i,t}$	0.108*** (17.06)	0.132*** (17.16)	0.080*** (8.59)
$Income_Dummy_{i,t+1}$ $\times Grade Low_{i,t} \times Debt Ratio_{i,t}$	0.00006 (0.45)	0.0001 (0.75)	-0.0004** (-2.32)
$(1 - Income_Dummy_{i,t+1})$ $\times Grade High_{i,t} \times Debt Ratio_{i,t}$	-0.167*** (-18.25)	-0.158*** (-14.26)	-0.185*** (-13.80)
$(1 - Income_Dummy_{i,t+1})$ $\times Grade Mid_{i,t} \times Debt Ratio_{i,t}$	-0.044*** (-7.07)	-0.032*** (-4.27)	-0.059*** (-6.50)
$(1 - Income_Dummy_{i,t+1})$ $\times Grade Low_{i,t} \times Debt Ratio_{i,t}$	-0.005 (-0.63)	0.009 (1.19)	-0.007 (-0.67)
Adj R2t	0.110	0.115	0.050

$Income_Dummy_{i,t+1}$: 정상소득의 상대소득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추정 결과에 의한다면 상위층과 중위층은 상대소득비율이 증가한 경우와 감소한 경우가 상반되게 나타난다. 즉 정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소득비율이 전기 대비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금융부채비율과 상대소득비율 변동치 간에는 비례적인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반대로 상대소득비율이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금융부채비율과 상대소득비율 변동치 간에는 반비례적인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원리금차감 가치분소득을 기준으로 이용하더라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위층과 중위층의 경우에는 정상소득 증가가 예상되거나 확신되는 경우에는 증가한 소득으로 부담할 정도의 금융부채를 차입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원리금을 차감한 가치분소득 역시 금융부채가 많

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본다면 중상위층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의 증가가 미래의 기대소득 증가를 전제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반면 하위층은 상대소득비율이 증가한 경우 금융부채비율이 높은 가계일수록 원리금 차감 가치분소득이 하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하위층의 경우 설령 미래의 소득 증가를 예상하거나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보다 금융부채로 인한 원리금부담이 훨씬 클 정도로 금융부채를 증가시켰음을 시사한다. 즉, 하위층은 현금흐름의 측면에서는 예상되는 소득 증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금융부채 차입으로 인해 가치분소득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중상위층과 달리 하위층의 금융부채 증가는 미래의 소득 증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득계층별 금융부채 증가 원인의 차이는 금융부채가 소득분배적 차원에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6. 결론

본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하여 소득분위별 부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득으로의 현금흐름이라는 관점에서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금융부채와 소득불평등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보다 초점을 두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득계층별로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지급액과 원금상환액 부담을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 부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금융부채 부담은 소득불평등도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원리금차감 가치분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 및 에스테반-레이지수와 같은 소득분배지수를 계산한 결과, 가계의 금융부채 증가에 따라 가치분소득의 불평등도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차감 후 가치분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해서 보더라도, 중위층을 제외한 상위층과 하위층 가계는 이러한 경향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하위층 가계는 경상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금융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그 가치분소득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위층 가계가 금융부채를 과도하게 차입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채 증가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하위층의 현금흐름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확대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단기간의 분석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금융부채가 직접적으로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금융부채 증가로 인한 원리금상환 부담이 하위층에서 훨씬 심하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의 가계의 금융부채 증가가 소득분배 차원에서도 우려할만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 및 금리인하 정책이 단기적으로 이들의 현금흐름을 개선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증가를 유발하고 원리금상환 부담을 확대시킴으로써 오히려 미래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근본적인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노력 없이 금융정책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 자료의 시계열 부족으로 인하여 금융부채가 소득계층별로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금융부채비율과 소득변화간의 시차관계를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내생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비하여 부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량변수와 그로 인한 소득흐름에 대한 영향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금융부채로 인한 문제를 가계의 파산이나 아니면 거시건전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기존 연구에 비하여 금융부채로 인한 소득흐름의 변화와 소득계층간의 차별적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가계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김경아(2011). 국내가계의 부채증가 추세 및 요인에 관한 연구: 미시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응용경제*. 13(1). 209-237.
- 김낙년(2012).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경제발전연구*. 18(2). 125-158.
- 김우영, 김현정(2009). 가계부채의 결정 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4월.
- 김정욱, 우석진, 원승연(2015). 가계부채와 소득불균형.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보고서.
- 김학주(2005).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담부채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119-147.
- 성명재(2011).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정책방향. *응용경제*. 13(2). 31-70.
- 신동균, 전병우(2005). 소득분포의 양극화 추이. *노동경제논문*. 28(3). 77-109.
- 유경원(2009).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분석: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분석*. 15(4). 1-32.
- 원승연(2014). 제4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강신욱, 김현경, 원승연, 김근혜.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 2014-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승훈, 임병인(2012). 금융위기 전후 가계부채 보유실태 및 부채위험 분석. *재정정책논집*. 14(2). 67-102.
- 최원호(2013). 가계부채와 금융자산보유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26(4). 527-559.
- 홍기석(2013). 가계부채와 부동산. *한국경제의 분석*. 19(3). 99-161.
- 함준호, 김정인, 이영숙(2010). 개인CB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환위험 분석. *한국개발연구*. 32(3). 1-34.
- Bertrand, M. & Adair, M. (2013). Trickle-down consumption. Working Paper. *March*.
- Esteban, J. & Debraj, R.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62(4). 819-851.
- Greenwood, J. & Boyan, J. (1990). Financial development, growth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1076-1107.
- Iacoviello, M. (2008). Household debt and income inequality. 1963-2003.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40(5). 929-965.
- Kumhof, M., Romain, R. & Pable, W. (2013).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Working Paper. *June*.
-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lknap Press.

The Influence of Households' Financial Debts on Income Inequality

Won, Seungyeon*

This paper, using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 analyzed the households' financial debts by income decile and the influence of financial debts on the income inequality.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households' incomes are lower, their burden from the financial debts are larger. Second, calculating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by the Gini's coefficient and Esteban-Ray Index, the inequality of the disposable income which is deducted by the interest and principal payment of financial debts became worse than that of current income. Third, as the households have higher financial debt ratios, their disposable incomes in next year decreased more. Above all, the lower-class households have the higher probability for their disposable incomes to decrease even if their current incomes increase. This shows that the increase of financial debts makes the lower-class households' disposable incomes worse than higher and middle class households' ones, which implies that the financial debts of households may aggravate the income equalit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 fundamental income distribution policy, not dependent on the financial supporting policy which increase the households' financial debts.

Key Words: disposable Income, household Debt, income inequality, payment of interest and principal

◆ 2015.07.28. 접수 / 2015.08.24. 게재 확정

* Associativ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Myongji University(sywon@mju.ac.kr).